

##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3 - 2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7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지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규칙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2023.3.03.>」(이하 “규칙”)에 따라 2023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03. 07.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2023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 유의사항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서류제출 전에 본 공고 사항 및 지침, 규칙 등 관련법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 선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선정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입찰, 선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는 SMP(전력거래가격)와 REC(공급인증서)가격의 합으로 구성된 입찰 가격 및 계약방식, 발전사업의 적정수익구조를 이해하고, 입찰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자 본인의 책임하에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결과에 대한 본인 정보 이외의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온라인 입찰 참여서 및 제출된 사업내역서의 입찰가격 오기, 정보불일치, 제출 서류의 미비 및 누락 등은 탈락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입찰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사업자 정보(발전사업 허가번호, 상호명, 발전소명, 대표자명, 연락처, 이메일 등) 오류로 인하여 계약 미체결이 될 수 있으며, 입찰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목 차

I. 공고 용량 .....	4
II. 참여자격 .....	4
가. 참여요건	
나. 참여제한	
III. 입찰시장 구분 및 용량 배분 .....	7
가. 탄소검증제 도입 시점에 따른 시장참여	
나. 시장별 용량 배분	
IV. 입찰 참여서 평가 .....	8
가. 평가 대상 및 방법	
나.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다. 세부 평가지침	
V. 입찰 세부내용 .....	12
가. 입찰 대상 설비	
나. 입찰 기간	
다. 선정결과 발표	

라. 상한 가격(SMP+1REC 가격)

마. 기준 전력거래가격

바. 참여 방법

사. 제출서류

VI. 선정 사업자 배분 ..... 17

VII. 참여 유의사항 ..... 18

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의 체결

나. 설치 기한의 준수

다. 20MW 이상 설비의 준공지연 페널티 및 계약시점

라. 입찰용량

마. 인증제품의 사용 등

바. 공급의무자의 계약 해제·해지 처리 가능 사항

사. 평가 제외 사항

아. ESS 단독입찰 계약 유의사항

VIII. 변경사항 안내 ..... 24

IX. 별첨 서류 ..... 25

## I

### 공고 용량

#### □ 공고 용량 : 1,000MW\* 이내(설비용량 기준)

\* 단, 접수용량이 공고용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부적격 설비를 제외한 접수용량을 기준으로 경쟁률\*\*이 1.1 : 1 이 되도록 최종 선정용량을 결정

\*\* (경쟁률) 접수용량 : 선정용량 = 1.1 : 1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에 의뢰한 용량의 합계

## II

### 참여자격

#### 가. 참여요건

- 입찰자 및 발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1.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발전설비이어야 함
  2.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으로 발전사업개시를 하지 않은 설비이어야 함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에 의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설비가 아니어야 함(단, 발전차액지원 중단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는 제외)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함
  5.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단위의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태양광)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저장하고 계통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저장 설비(ESS)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설비이어야 함

6. RPS 태양광 판매사업자(~2016),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또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등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발전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100MW 이상의 발전설비 중 용량을 분할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분할 용량 각각에 대해 매매 계약 체결여부를 판단) 단,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태양광 설비의 연계설비(ESS설비)로 참여하는 발전소는 제외함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인증을 득한 태양광모듈, 인버터, 접속함을 사용하여야 함
8. 참여제한 발전소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단, 참여제한이 입찰기간 시작일 전일에 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 (참여제한 발전소를 타인이 양수한 경우에도 입찰 불가)

## 나. 참여제한

### 1) 선정일로부터 5년간 참여 제한하는 경우

- 선정 사업자가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단, 공급의무자의 귀책사유인 경우는 예외로 함)

### 2) 선정일로부터 3년간 참여 제한하는 경우

- 20MW 미만의 선정 사업자가 계약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로서 공급의무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 1MW 미만 7개월(6개월 연장시 13개월), 1MW 이상 20MW 미만 12개월(6개월 연장시 18개월)

- 다만, 계통접속 지연 사유로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가 계통접속 지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자료\*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할 경우 향후 3년간 참여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한전으로부터 계통접속 지연이 지속되는 사실을 담은 공문 등

- 20MW 이상의 선정 사업자가 계약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로서 공급의무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 20MW 이상 24개월 (최대 18개월의 기간연장시 42개월)

- 입찰 참여서 및 사업내역서 내용과 다르게 설비가 설치되거나 접수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또는 첨부자료가 허위에 해당하여 선정취소된 경우

### 3) 미이행 확인일로부터 3년간 참여 제한하는 경우

-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4) 제한조치 지정일로부터 3년간 참여 제한하는 경우

- 대상설비의 사후관리에 따른 제한조치를 받은 발전소 중 신·재생에너지 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경우

### 5) 계약해지일로부터 3년간 참여 제한하는 경우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FIT) 계약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 규칙 개정 시행일('22.5.12) 이후 계약 해지한 발전소에 적용

※ 참여 제한은 발전사업허가번호, 발전사업 대표자, 발전소명, 발전소 부지 등 발전사업허가에 대해 적용하며,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내에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Ⅲ

## 입찰시장 구분 및 용량 배분

### 가. 탄소검증제 도입 시점에 따른 시장참여

-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최초 발급시점('20.9.16)을 기준으로 탄소검증 모듈 사용 가부 및 여부에 따라 참여시장 결정

\*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고시 제정 '20.5.27일, 시행 '20.6.15일)

- 1) **기존설비 시장:**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최초 발급 이전('20.9.15일까지)에 모듈계약을 체결하여 탄소검증모듈을 사용하지 못한 발전소 ⇨ 유형①

\* '20.9.15일까지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경우 '사용전검사확인증'을 제출 필요

\* '20.9.15일까지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제조업체와 '20.9.15일까지 체결한 '모듈공급계약서' 제출 필요

- 2) **신규설비 시장:**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최초 발급 이후('20.9.16일부터) 모듈 구매계약을 체결한 발전소 ⇨ 유형② 및 유형③

\* 단, 제조업체의 부도, 모듈의 단종 및 수급여건에 따른 생산지연 등으로 탄소 검증 모듈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객관적으로 증빙가능 시 예외적으로 기존 시장에 참여 가능(모듈 제조사와의 발주 협의기록(이메일, 팩스 등))

#### < 탄소검증제 도입 시점에 따른 시장참여 >

구분	유형①	유형②	유형③
구분 기간	'20.9.15일까지	'20.9.16일부터	
검증인정서 발급가능 여부	발급불가(선택권 없음)	발급가능(탄소검증모듈 선택가능)	
탄소검증모듈 사용여부	X	X	O
	↓		↓
시장참여	기존설비 시장 참여	신규설비 시장 참여	

### 나. 시장별 용량 배분

- '탄소검증제 도입시점'을 기준으로 2개(①, ②)의 입찰그룹을 분리하여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되도록 용량을 배분

#### < 탄소검증제 도입시점별 입찰그룹 >

구분	기존설비 시장	신규설비 시장
전체 설비	①	②

## IV

## 입찰 참여서 평가

### 가. 평가 대상 및 방법

- 입찰자 중 “상한가격” 이하의 입찰가격을 제시하고, 참여자격을 만족하는 입찰 참여서(입찰자 및 그 입찰자의 설비 등)를 대상으로 평가
- 평가는 ‘기존설비 시장’ 및 ‘신규설비 시장’으로 구분하여 평가 진행
- 계량평가를 통해 평가대상(1.2배수\*, 참여 시장별)을 선정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사업내역서 평가 진행
  - \* 접수용량이 공고용량보다 적을 경우, 접수용량 모두 평가대상으로 함
- 태양광을 포함한 태양광연계 ESS는 태양광 설비용량 및 가중치 등 태양광 설비를 기준으로 평가 진행(ESS 설비용량은 선정용량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내역서 평가 완료된 평가 대상(1.2배수\*) 중 계량평가와 사업내역서 평가 합계점수로 선정을 진행
  - \* 접수용량이 공고용량보다 적을 경우, 접수용량 모두 평가대상으로 함



## 나.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구분	평가지표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배점	
			기존시장 <sup>주1)</sup>	신규시장 <sup>주2)</sup>
계량평가	입찰가격	· 기존 : [(상한가격-입찰가격)÷상한가격] × 85 · 신규 : [(상한가격-입찰가격)÷상한가격] × 70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85	70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탄소배출량 검증 모듈 사용 여부 및 수준 * 670kg-CO <sub>2</sub> /kW이하 : 15점, 670kg-CO <sub>2</sub> /kW초과 730kg-CO <sub>2</sub> /kW이하 : 10점, 730kg-CO <sub>2</sub> /kW초과 830kg-CO <sub>2</sub> /kW이하 : 5점, 830kg-CO <sub>2</sub> /kW초과(또는 탄소배출량 미검증) : 1점 * 단, 2종 이상 태양광모듈을 혼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기준으로 배점 부여	-	15
사업내역서평가	<b>1. 발전소 개발 진행도</b>			
	배점	<b>3점</b>	<b>2.5점</b>	<b>2점</b>
	기준	사용전검사 확인증 제출	개발행위허가증 또는 공사계획신고필증 제출	발전사업 허가증 제출
			3	3
	<b>2. 자금조달 현황(계획)에 따른 자기자본 비율</b>			
배점	<b>3점</b>	<b>2.5점</b>	<b>2점</b>	
기준	25% 이상	15% 이상 ~ 25% 미만	15% 미만	
		3	3	
* [별첨 3] 태양광발전소 자금조달현황(계획서) 제출 * 신용정보조회 자료(한국신용정보원 등), 잔고증명서 및 견적서(첨부 필수) 등을 통해 자기자본 비율 증빙				
<b>3.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b>				
배점	<b>3점</b>	<b>2.5점</b>	<b>2점</b>	
기준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 계약서(청약서)	화재보험, 풍수해보험 등 계약서(청약서)	미가입	
		3	3	
* 종합 보험/공제 : 태양광 발전설비 직접손해와 운영중 발생(자연재해 포함)하는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공제 * 발전소 준공 후 운영에 관계된 보험 또는 공제 외 불인정				
<b>4. 농·축산·어업인,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b>				
배점	<b>3점</b>	<b>2점</b>		
기준	농·축산·어업인이 보유한 설비이거나, 신청설비가 신·재생에너지센터 규칙 [별표1]의 "주민참여형 설비"인 경우	그 외		
		3	3	
<b>5. 발전소 설비 가동기간</b> (60 - 발전소가동기간*) × 3점 60 * 발전소 가동기간 <sup>주3)</sup> : 설비확인서 최초 발급월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개월) (단, 6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개월 적용)				
		3	3	
필수제출	'20.6월말* 이전 설비확인 신청 태양광발전설비는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 임야에 설치한 경우 '19.6월말 이전 설비확인 신청설비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관련기관 확인서류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합 계			100	100

주1) 기존시장 :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발급전('20.9.15까지) 모듈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탄소검증모듈을 사용하지 못한 발전소

주2) 신규시장 :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최초 발급시점 이후('20.9.16부터) 모듈 구매계약을 체결한 발전소

주3) 2023년 3월 3일 이전에 제13조에 따른 설비확인서 최초 발급이 완료된 태양광발전설비의 발전소 가동기간은 2023년 3월부터 경쟁입찰 공고일까지의 기간(개월)으로 적용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방안(‘20.10월)”의 후속조치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이전에 RPS 등록을 신청한 설비\*의 경우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 대상 설비 >**

구분	제출 의무 대상 설비
임야	'19.6.30일 까지 RPS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82 ('19.5.16)호에 따른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시행 이전 설비)
임야 외	'20.6.30일 까지 RPS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 ('20.1.8)호에 따른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시행 이전 설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을 제출할 경우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건과 동일하게 인정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증빙하기 위해 발전사업허가증의 검토 의견을 제출할 시 불인정될 수 있음

- **(최종 선정)** 기존, 신규 시장별로 해당 선정용량 범위 내에서 계량평가 점수와 사업내역서 평가점수의 합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선정

\* ‘잔여 선정용량’을 최초로 초과하는 발전설비의 경우, ‘해당 발전소의 전체용량’ 중 ‘잔여 선정용량’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선정하며, 50% 미만인 경우 공급의무자 측과 협의 후 추가 용량에 대해 수용 가능한 경우 선정하고 미수용시 선정하지 않음

- **(동점처리기준)** 최종 평가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선정

1. 계량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2. 사업내역서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3. 설비용량이 적은 경우
4. 사용전검사일이 빠른 경우

## 다. 세부 평가지침

### <계량평가 : 85점>

- 입찰가격지표는 입찰자가 입찰 참여서에 제시한 입찰가격(SMP+1REC 가격의 합산가격)을 이용해 산정기준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
- (신규시장 적용)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평가지표는 15점 이내에서 탄소배출량 검증 모듈 사용 여부 및 수준에 따라 배점 부여
  - \* '21년 5월 이후 개정된 신규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사용목적, 신청자명, 허가번호 등 추가)에 대해서만 인정, 이전 검증인증서는 제출 시 1점 부여
  - \* 단, 2종 이상 태양광모듈을 혼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기준으로 배점 부여
  - \*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 제품 현황은 센터홈페이지(knrec.or.kr) 접속 → '주요사업'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및 검증' 클릭 → '탄소검증제' 클릭 → '추가정보' 클릭 →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 발급목록' 엑셀 다운로드하여 조회 가능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사업실, 1855-3020)

### <사업내역서 평가 : 15점>

- 입찰 참여서에 첨부한 사업내역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을 위촉된 평가위원이 평가
  - 발전소 개발 진행도(3점)
    - 사용전검사확인증, 개발행위허가증, 공사계획신고필증 및 발전사업허가증 중 해당 서류 제출(해당 서류 외 불인정)
  - 자금조달 현황(계획)에 따른 자기자본 비율(3점)
    - 자금조달 현황 계획서 : [별첨3]태양광발전소 자금조달 현황(계획서)
    - 견적서(총액) : 태양광 시공비용 총액을 증빙할 수 있는 견적서, 계약서 등
    - 대출현황 등 증빙서류(자기자본) : 신용정보조회 자료(한국신용정보원 등)를 통해 대출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 자금조달 현황 계획서, 견적서(총액), 대출현황 등 증빙서류(자기자본) 중 어느 하나라도 서류 누락시 기본 점수 부여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3점)

- 종합보험(공제) 또는 기타 재물손해 보험 등을 증빙 가능한 서류
- 발전소명, 주소 및 제3자 피해보상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 불가능한 서류는 기본 점수 부여
- 보험기간이 공고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는 불인정하며, 기본 점수 부여
  - \* 보험을 갱신한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발전소 준공 후 운영에 관계된 보험 또는 공제 서류만 인정

- 농·축산·어업인,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3점)

- 농·축산·어업인, 주민참여형 설비인 경우(3점)
  - \* 세부확인 서류는 [별첨2] 사업내역서(표준양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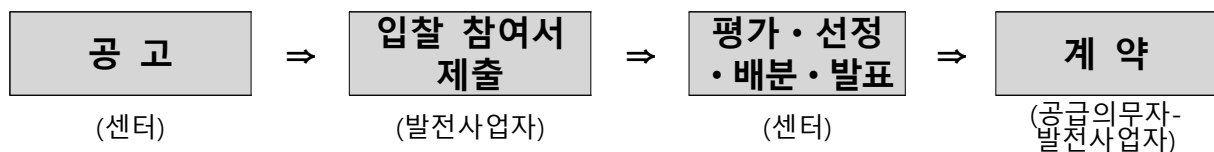
- 발전소 설비 가동기간(3점)

- 발전소 가동기간은 최초 설비확인이 완료된 월로부터 해당 공고월까지의 기간(개월)이며, '23년 3월 3일 이전에 최초 설비확인이 완료된 경우는 '23년 3월부터 해당 공고월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V

입찰 세부내용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추진 절차 >



가. 입찰 대상 설비

- 1) 태양광설비
- 2) 태양광설비 및 해당설비 연계 ESS설비
- 3) ESS설비(장기계약이 체결된 태양광설비의 연계설비)

나. 입찰 기간 : 태양광 설비용량과 관계없이 일괄 신청

< 입찰 접수 기간 >

2023.03.13(월) 09:00부터 ~ 03.31(금) 18:00까지 (주말포함, 상시접수)

- \* 입찰기간 동안 온라인 입찰 참여서 작성 및 임시저장 가능(단, 제출완료한 입찰 참여서는 수정 불가)
- 입찰 마감일까지 입찰 참여서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입찰 참여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입찰 마감일에는 신청건수의 폭증으로 시스템 과부하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마감 1일전까지 제출완료 요망
- 소유권 이전 중인 발전소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접수기간 전에 공단에 소유권이전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입찰참여 시 양수인으로 작성 요망

다. 선정결과 발표 : 2023년 5월 26일(금) (예정)

라. 상한 가격(SMP+1REC가격)

구 분	육지	제주
상한가격(원/MWh)	153,494	157,700

\* SMP는 1MWh를 기준으로 함

※ 계통연계비용은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입찰 참여(별도 정산 없음)

마. 기준 전력거래가격

구 분	통합
기준 전력거래가격(원/MWh)	106,320

바. 참여 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입찰 참여서 작성 및 관련 제출서류를 등록하여 접수
- ※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방문 등의 기타 방법으로는 접수 불가
- 입찰 참여서는 온라인 전산화면에 내용을 직접 기입

- 입찰가격은 SMP+1REC가격으로 원단위로 기재하며, 참여용량은 소수점 셋째자리 까지 표기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입찰가격 >

$$\text{입찰가격(원)} = \text{SMP(원)} + \text{1REC가격(원)}$$

\* SMP는 1MWh를 기준으로 함

- 서류접수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함
- o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 접속 방법(아래 3가지 방법 모두 가능)
  - ① 인터넷 주소창에 아래의 주소 직접 입력
    - ▶ 홈페이지 주소 : <https://rps.energy.or.kr/loginfst.do>
  - ②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종합지원시스템 접속 → ‘고정가격계약 바로가기’ 클릭
  - ③ 신·재생에너지센터(knrec.or.kr)접속 → ‘주요사업’ → ‘RPS’의 ‘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 클릭

#### 사. 제출서류

- o 제출서류는 PDF 전자파일(5MB 미만)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전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적으로 첨부하였는지 반드시 확인
- o 설비확인서가 발급된 발전소와 설비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발전소(미준공 발전소)를 구분하여 아래 표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신청 시 제출서류 >

구 분	제출(첨부) 서류 종류	발전소 추진 단계		설 명
		설비확인서 발급 완료	미준공 또는 설비확인서 미발급	
공통서류	① <b>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b>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설비 확인 신청서는 불인정)	필수	-	설비확인 완료 발전소
	② <b>발전사업 허가증</b> (임시허가증 불인정)	-	필수	설비확인 미완료 발전소
	③ <b>사업자 등록증</b>	-	필수	
	④ <b>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b>	-	해당하는 경우 제출	

구 분	제출(첨부) 서류 종류	발전소 추진 단계		설 명
		설비확인서 발급 완료	미준공 또는 설비확인서 미발급	
계량 평가 서류	⑤ 제조업체와 <b>모듈구매계약 체결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b> (공급체결 계약서 등)	해당하는 경우 제출	해당하는 경우 제출	기존시장 참여
	⑥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 인정서 * '21.5.27 이후 개정된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사용목적, 허가번호 등 포함)만 인정	해당하는 경우 제출	해당하는 경우 제출	신규시장 참여
사업내역서 평가 서류	⑦ <b>사업내역서(별첨 서식)</b>	<b>필수</b>	<b>필수</b>	모든 발전소 (증빙서류 미첨부 시 최저 점수 부여)
	㉠ <b>개발행위허가증</b> (개발행위 면제 서류 등 불인정)	-	해당하는 경우 제출	
	㉡ <b>공사계획 신고필증</b> (임시 필증은 불인정)	-	해당하는 경우 제출	
	㉢ <b>사용전검사확인증</b> (사용전검사실시확인서는 불인정)	-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자금조달 현황 확인 서류 * 계획서, 견적서, 증빙서류 필수	해당하는 경우 제출	해당하는 경우 제출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서류 * 발전소 준공 후 운영에 관계된 보험 또는 공제만 인정	해당하는 경우 제출	해당하는 경우 제출	
	㉥ 농·축산·어업인,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제출	해당하는 경우 제출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서류	⑧ <b>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b> * 개발행위 허가 비대상일 경우, 관련기관 확인 서류 제출 필요	<b>필수</b>	-	기존시장 참여 발전소 중 제출 의무대상은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구 분	제출(첨부) 서류 종류	발전소 추진 단계		설 명
		설비확인서 발급 완료	미준공 또는 설비확인서 미발급	
기타 서류	⑨ 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총 괄표제부 포함)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 불인정)	-	해당하는 경우 제출	규칙 별표1에 따른 건축물 이용 발전소에 해당하는 경우
	⑩ 시설물 확인 서류 (인·허가 고시 등 관련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제출	해당하는 경우 제출	규칙 별표1에 따른 기존시설물 이용 발전소
	⑪ ESS 관련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확인서류 (지자체 공문 등 관련 증빙 서류, 임시 필증은 불인정)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전력저장 설비(ESS)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⑫ ESS 설비 시험성적서 (축전지 및 전력변환장치(PCS) 각각 제출 규칙 별표1에 따른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제출	-	
	⑬ 태양광설비 공급인증서 매매 계약서 (ESS설비 단독입찰건에 한함)	해당하는 경우 제출	-	ESS 설비 단독입찰 발전소로 입찰에 참여 하는 경우
	⑭ 탄소검증 모듈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기업부도, 모듈의 단종 및 수급여건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모듈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를 증빙하는 자료(공문 이메일 팩스 등)	해당하는 경우 제출	해당하는 경우 제출	'신규시장' 참여자 중 예외적으로 '기존시장'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
	⑮ ESS 단독입찰 공급의무자 확인서 [별첨 4] 서식	해당하는 경우 제출	-	태양광설비를 계약한 공급의무자가 본 공고에 선정의뢰하지 않은 경우

\* 설비확인서,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누락시 평가제외될 수 있음

\*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 의무대상이 미제출시 평가제외 됨



## VI

## 선정 사업자 배분

- 다음 각 호의 공급의무자에게 선정의뢰 용량기준으로 선정 사업자를 배분
  - ① 한국수력원자력            ② 한국남부발전(주)            ③ 한국중부발전(주)
  - ④ 한국남동발전(주)        ⑤ 한국서부발전(주)            ⑥ 한국동서발전(주)
  - ⑦ 한국지역난방공사
- \* 선정의뢰 용량이 큰 순서이며, 선정의뢰 용량이 동일한 경우는 2023년도 총 의무 공급량이 큰 순서임
- 선정사업자의 설비용량이 큰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공급의무자의 선정의뢰 용량 비율별로 배분함
- 공급의무자가 출자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공급의무자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며, 다수의 공급의무자가 출자한 사업의 경우 해당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받아 우선적으로 배분함
- 선정 사업자의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는 동일한 공급의무자에게 배분함 (다만, ESS 설비 단독으로 선정된 경우 기존 태양광계약을 체결한 공급의무자에게로 배정됨)
- 단,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가중치를 적용한 용량 가중평균 입찰가격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용량 등이 공급의무자간 동일하게 배분되도록 할 수 있음

## VII

## 참여 유의사항

### 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의 체결

- 선정 사업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배분된 공급의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체결시 선정 사업자는 아래 계약방식의 고정가격\*으로 계약하여야 함
  - \* 고정가격이란 선정 사업자의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선정 사업자의 가중치에 따라 결정된 최종가격을 말함

#### < 고정가격 계약 방식 >

##### ○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

- 고정가격 = 기준전력거래가격 + (입찰가격 - 기준전력거래가격) × 가중치
- 단, SMP는 계약체결을 위해서 제시된 기준전력거래가격을 적용 (기준전력거래가격 : 106,320원/MWh(통합))
- 가중치는 입찰 참여서 신청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함. 단, 설비확인, 설비변경 및 사후관리 등으로 고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가중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가중치를 적용한 고정가격으로 변경 계약하여야 함

#### < 공급인증서 지급단가 >

##### ○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

- 공급인증서(REC) 지급단가 = (고정가격 - 월단위 전력거래가격) ÷ 가중치
- ※ 월단위 전력거래가격이 고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공급인증서(REC) 지급단가는 '0'으로 적용
- ※ 월단위 전력거래가격은 전력거래처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월 가중평균 SMP를, 전력거래소에서는 시간대별 SMP를 적용 (세부사항은 공급인증서 계약일반조건 참고)

### ○ 선정 사업자의 태양광과 ESS는 각각 별도로 계약 체결

- 다만, ESS설비에서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일부(일정비율)를 기존 태양광 설비의 계약단가(태양광설비 가중치 적용)로 거래하고 있는 경우, ESS 설비에 대한 별도 계약은 'ESS설비에서 발급된 공급인증서 전체<sup>①</sup>'에서 위에서 말한 '태양광설비의 계약단가로 거래 중인 공급인증서<sup>②</sup>'를 차감하고 '잔여 공급인증서<sup>③</sup>'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ESS설비의 잔여 공급인증서<sup>③</sup> = ESS설비의 공급인증서 발급량 전체<sup>①</sup> - PV단가로 거래중인 ESS설비의 공급인증서 발급량<sup>②</sup>

- 매매계약은 아래 기준에 따라 선정된 해당 설비(태양광 또는 태양광 연계 ESS)로부터 발생하는 공급인증서를 전량 거래하는 것으로 하며, 태양광의 계약기간은 20년, ESS의 계약기간은 15년으로 함
- 계약일 이전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 : 계약일이 속한 월로부터 공급된 전력량
  - \* 계약일 이전에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는 현물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함
- 계약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 : 상업운전개시일이 속한 월로부터 공급된 전력량
  -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의 공급인증서 발급일로부터가 아님

## 나. 설치 기한의 준수

- 선정 사업자의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MW 미만은 7개월 이내, 1MW 이상 20MW 미만의 경우 12개월 이내, 20MW 이상의 경우 24개월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여야 함.
- 20MW 미만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해 공급의무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2개월(계통접속지연\*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연장가능
  - \* 단, 한전 계통접속 지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사실을 공문서로 입증하여야 함
- 20MW 이상의 경우 계약체결후 24개월이 경과한 후 1회당 6개월씩 최대 18개월(총3회)까지 준공지연 페널티(낙찰가 감액) 부여 후 기간 연장이 가능
  - \* 1차 연장(6개월), 2차 연장(6개월, 누적 12개월), 3차 연장(6개월, 누적 18개월)

## 다. 20MW이상 설비의 준공지연 페널티 및 계약시점

- 20MW 이상 설비로 선정된 사업자가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24개월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준공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한 기간 동안 20MW이상 설비의 낙찰평균가 하락률의 120% 만큼 당초 계약된 낙찰가에서 감액
- 첫 6개월 기간연장시에는 선정된 해당회차의 20MW이상 설비 낙찰평균가(a)에서 해당 입찰이후 첫 번째 20MW이상 설비 낙찰평균가(b)까지 하락률( $=\frac{a-b}{a} \times 100$ )의 120%를 당초 계약된 낙찰가(c)에서 감액하고,

\* (예) '22.2월 계약체결(낙찰가 105원(c), 해당 입찰 20MW이상 설비 낙찰평균가 100원(a))  
 → '24.2월까지 미준공 & 1차 기간 연장시(6개월, ~'24.8), '22.下 대비 '24.上的 20MW  
 이상 설비 낙찰평균가 하락률(△5% 가정, 100원 → 95원(b))의 120% 반영(△6%, 6원)  
 → 계약된 낙찰가 105원(c)에서 6원을 감액하여 낙찰가를 99원으로 조정

○ 이후 2~3차 기간 연장시, 매 6개월 마다 입찰 회차를 가산하여 20MW  
 이상 설비 낙찰평균가 하락률의 120% 만큼, 낙찰가격(c)에서 감액

\* (예) 2차 기간 연장시(~'25.2) → '22.下 대비 '24.下的 20MW이상 설비 낙찰평균가  
 하락률(△10% 가정, 100원 → 90원, △10원)의 120% 반영(△12%, △12원) → 계약된  
 낙찰가 105원(c)에서 12원을 감액한 93원으로 계약가격 조정

○ 기간 연장 이후 사용전검사 완료시, 선정 사업자와 공급의무자는  
 20MW이상 발전설비의 사용전검사 완료일부터 2개월 내에 감액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함

## 라. 입찰용량

○ 입찰용량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 용량의 90%이상  
 110%이하로 신청이 가능

○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설비 중 100MW 이상의 발전설비는 최소 40MW이상의  
 용량으로 분할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단, 선정 공고별로 하나의 분할된 설비만 입찰에 참여 가능하며 분할된  
 설비는 설비확인 신청시 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설비확인을 신청하여야함

## 마. 인증제품의 사용 등

○ 선정 사업자의 태양광발전소는 반드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인증을 득한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에 따른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

## 바. 공급의무자의 계약 해제·해지 처리 가능 사항

### 1) 계약체결일로부터 기간내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1MW 미만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이내, 1MW 이상 20MW 미만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계약당사자간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해 공급의무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2개월 이내(계통접속지연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발전소 설치 기간을 연장을 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20MW 이상 설비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단, 공급의무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1회당 6개월씩 최대 18개월(총 3회)까지 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용전검사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이 모두 경과했음에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2) 감액된 가격으로 재계약체결기한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20MW 이상 설비가 발전소 설치기간을 연장(1회당 6개월씩)하여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후, 사용전검사 완료일로부터 재계약 체결기한(2개월)까지 당초 낙찰가격에서 감액된 가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3) 태양광과 태양광 연계 ESS로 선정이 된 경우에, 태양광 또는 태양광 연계 ESS중 하나의 설비라도 계약일로부터 설비규모별 발전소 설치 기간내에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4) 입찰참여서 및 사업내역서 내용과 다르게 설비가 설치되거나 접속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또는 첨부자료가 허위에 해당하여 선정이 취소된 경우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이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1. 태양전지 모듈의 효율이 같거나 그보다 높고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이 같은 수준\*이거나 그보다 적은 모델로 변경한 경우

\* 탄소배출량 구간 : 670kg·CO<sub>2</sub>/kW이하 / 670kg·CO<sub>2</sub>/kW초과 730kg·CO<sub>2</sub>/kW이하 / 730kg·CO<sub>2</sub>/kW초과 830kg·CO<sub>2</sub>/kW이하 / 830kg·CO<sub>2</sub>/kW초과 (또는 탄소배출량 미검증)

2. 인버터, 접속함 등 기타 설비의 당초 모델이 단종되었거나 제조회사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

5)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6) 참여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공고문의 'II. 참여자격' 참고

7) 참여용량을 초과하였거나 80%미만으로 설치한 경우

8) 선정된 사업자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선정된 사업 내용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9) 기타 공고내용 및 계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 평가 제외 사항

○ 입찰자는 선정 공고별로 하나의 발전사업 허가에 대하여 하나의 입찰 참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개 이상 중복으로 입찰 참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발전소 입찰 참여서는 모두 무효처리함

○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 대상 설비가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이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않아도 되는 경미한 대상임을 증명할 서류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입찰자는 제출 완료한 입찰 참여서를 수정할 수 없음

※ 입찰가격 등 중요부분의 기재 오류를 이유로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참여 취소 공문(문서)을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 해당 입찰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음. 단, 취소 후 입찰자는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아. ESS 단독입찰 계약 유의사항

- ESS 단독입찰의 경우 선정시 태양광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공급의무자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 입찰공고에 선정의뢰를 하지 않은 공급의무자\*와 태양광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ESS설비에 대한 계약 가능여부를 입찰자가 입찰 참여 이전에 공급의무자로부터 사전에 확인\*\*을 받아야 함
  - \* 선정의뢰한 공급의무자는 VI 선정사업자 배분(p .17)을 참고
  - \*\* [별첨4]의 확인서 제출
- 선정의뢰를 하지 않은 공급의무자로부터 사전에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선정이 되더라도 공급의무자가 거절하여 계약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음

VIII

**변경사항 안내**

- (SMP 정산단가 상한) '23년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부터 선정된 발전소들의 SMP 정산단가는 관련고시\*에 따라 해당 발전설비의 고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긴급정산상한가격 지정시에는 고정가격과 긴급정산상한가격 중 낮은 값을 정산상한가격으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29호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및 제 2022-230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평가 기준) 「태양광 모듈 탄소검증제 개편 방안(‘23.01, 산업부)」에 따라 ‘23년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부터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평가 기준 변경 예정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평가 기준>

현행	변경(23년 하반기~)
<p><b>탄소배출량 검증 모듈 사용 여부 및 수준</b></p> <p>* 670kg-CO<sub>2</sub>/kW이하 : 15점,            670kg-CO<sub>2</sub>/kW초과 730kg-CO<sub>2</sub>/kW이하 : 10점,            730kg-CO<sub>2</sub>/kW초과 830kg-CO<sub>2</sub>/kW이하 : 5점,            830kg-CO<sub>2</sub>/kW초과(또는 탄소배출량 미검증) : 1점</p> <p>* 단, 2종 이상 태양광모듈을 혼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기준으로 배점 부여</p>	<p><b>탄소배출량 검증 모듈 사용 여부 및 수준</b></p> <p>* 630kg-CO<sub>2</sub>/kW이하 : 15점,            630kg-CO<sub>2</sub>/kW초과 670kg-CO<sub>2</sub>/kW이하 : 10점,            670kg-CO<sub>2</sub>/kW초과 730kg-CO<sub>2</sub>/kW이하 : 5점,            730kg-CO<sub>2</sub>/kW초과(또는 탄소배출량 미검증) : 1점</p> <p>* 단, 2종 이상 태양광모듈을 혼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기준으로 배점 부여</p>



**IX****별첨 서류**

- ① 고정가격 경쟁입찰 참여서(온라인 신청서 작성)
- ② 사업내역서(표준양식)
- ③ 태양광발전소 자금조달 현황(계획서)
- ④ ESS단독입찰 공급의무자 확인서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관련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 : 전화 1855-3020

○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 제도 및 제품 관련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사업실 : 전화 1855-3020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대한 공급인증서 거래 관련 문의

☞ 전력거래소(전력신사업처 신재생시장팀) : 전화 1600-9617



**별첨 2**

**사업내역서(표준양식)**

\* 본 사업내역서는 작성 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에 첨부 서류로 제출 바람

사업내역서(표준양식)

**1. 참여자 및 발전소 개요**

상 호 명		발전 사업 허가 용량		kW
발전소명		입 찰 용 량	태양광	kW
대 표 자			배터리 (ESS)	kWh
발 전 소 소 재 지			전력변환장치 (ESS)	kW

\* 입찰용량란에는 실제 준공된 설비 용량 또는 설치 예정 용량을 기재

**1.1 발전소 입지(가중치 적용 내용을 기재, 택일사항)**

○ '21년 7월 27일 이전 가중치 기준 적용 발전소

(단위 : kW)

입지 (가중치)	건축물 이용(1.0~1.5)	기존시설물 이용(1.0~1.5)	수상태양광 (1.5)	일반부지 (0.7~1.5)	임야 (0.7)	합 계
설비용량						

\* 입지가 2가지 이상일 경우는 해당사항 모두 기재, 합계는 참여용량과 동일해야 함

○ '21년 7월 28일 이후 가중치 기준 적용 발전소

(단위 : kW)

입지 (가중치)	건축물 이용(1.0~1.5)	기존시설물 이용(1.0~1.5)	수상태양광 (1.2~1.6)	일반부지 (0.8~1.2)	임야 (0.5)	합 계
설비용량						

\* 입지가 2가지 이상일 경우는 해당사항 모두 기재, 합계는 참여용량과 동일해야 함

## 2. 사용되는 주요 부품

### 2.1 태양광 모듈

구 분	단일제품 사용 시	2종 이상 제품 혼용 시	
모 델 명			(필요시 추가)
제 조 회 사			
제 조 국			
출 력(W)			
매 수(장)			

\* “음영란”에는 2종류의 제품을 혼용할 경우에만 작성, 1종류만 사용할 경우는 공란 처리

### 2.2 태양광 인버터

구 분	단일제품 사용 시	2종 이상 제품 혼용 시	
모 델 명			(필요시 추가)
제 조 회 사			
제 조 국			
출 력(kW)			
매 수(개)			

\* “음영란”에는 2종류의 제품을 혼용할 경우에만 작성, 1종류만 사용할 경우는 공란 처리

### 2.3 전력저장 설비(ESS) 축전지

구 분	단일제품 사용 시	2종 이상 제품 혼용 시	
모 델 명			(필요시 추가)
제 조 회 사			
제 조 국			
출 력(W)			
매 수(개)			

\* “음영란”에는 2종류의 제품을 혼용할 경우에만 작성, 1종류만 사용할 경우는 공란 처리

### 2.4 전력저장 설비(ESS) 전력변환장치

구 분	단일제품 사용 시	2종 이상 제품 혼용 시	
모 델 명			(필요시 추가)
제 조 회 사			
제 조 국			
출 력(kW)			
매 수(개)			

\* “음영란”에는 2종류의 제품을 혼용할 경우에만 작성, 1종류만 사용할 경우는 공란 처리

3. 사업내역서 평가 부문(\* 해당항목에 “√” 표시한 후, 관련 입증서류는 별도 제출)

3.1 발전소 개발 진척도

사용전검사확인증	개발행위허가증 또는 공사계획신고필증	발전사업허가증

\* **[발전소 개발 진행 확인서류]** 발전사업허가증, 개발행위 허가증 또는 공사계획 신고필증, 사용전검사 확인증

3.2 자금조달 현황(계획)에 따른 자기자본 비율 [\* (별첨3)양식 추가 작성 및 제출

(단위: 백만원)

자기자본	용자	정부 또는 지자체 무상지원금	총사업비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비율 (%)

\* 태양광발전소 자금조달현황(계획서) 제출 : 신용정보조회 자료(한국신용정보원 등), 잔고 증명서 및 견적서 등의 자기자본 비율 증빙 가능한 서류 첨부 필수

3.3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 계약서(청약서)	화재보험, 풍수해보험 등 계약서(청약서)	미가입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확인서류]** 종합보험(공제) 또는 기타 재물손해 보험 등을 증빙 가능한 서류  
 ☞ 종합 보험/공제 : 태양광 발전설비 직접손해와 자연재해 또는 운영중 발생하는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공제

3.4 농·축산·어업인,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

농·축산·어업인이 보유한 설비이거나, 신청설비가 RPS 규칙 [별표1]의 “주민참여형 설비”인 경우	그 외

3.5 발전소 설비 가동기간

‘23.03.03 이전 설비확인 완료 설비	‘23.03.04 이후 설비확인 완료 설비	미준공

**<농·축산·어업인, 주민참여형 설비 확인서류>**

○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4 서식에 의거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서 발급**

○ **(어업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

○ **(축산업인) 축산업 허가(등록)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1부**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1~24호, 제29호의3 서식에 의거하여 **지자체에서 발급**

○ **(주민참여형 설비)**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거하여 ‘주민참여형설비’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참여주민은 태양광발전소의 소재지가 속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단, 토지 참여주민은 제외), 최소 5인 이상 참여, 1인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30%미만이어야 하며, 주민참여율은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이어야 함

**태양광발전소 자금조달 현황(계획서)**

제출인 (발전사업자)	①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자기자본	⑤금융기관 예금액 원	⑥주식·채권 매각대금 원
	⑦현금 등 기타 원	⑧소계 원
용자 등	⑨금융기관 대출액 원	⑩사채 원
	⑪기타(정부 또는 지자체 무상지원금) 원	⑫소계 원
⑬ 총사업비		원
⑭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비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10조에 따른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 시 위와 같이 태양광발전소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입찰 선정 및 계약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유의사항**

1. 본 계획서에는 태양광발전소 준공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⑤ ~ ⑦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기재합니다.
3. ⑨ ~ ⑪에는 외부 차입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기재합니다.
4. ⑧에는 ⑤ ~ ⑦의 합계액을, ⑫에는 ⑨ ~ ⑪의 합계액을, ⑬에는 ⑧과 ⑫의 합계액을, ⑭에는 ⑧/⑬의 값을 각각 기재합니다.
5. 각 항목별 증빙자료(⑤~⑬) 미 첨부시, 평가배점은 기본점수 부여

